

2022 - 189

가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156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
2022년 1월 20일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129,979	
서울특별시	종로구	신문로2-12	1,248	공공재개발
	동대문구	신설1	11,204	
	동대문구	용두1-6	13,633	
	강북구	강북5	12,870	
	영등포구	양평13	22,441	
	영등포구	양평14	11,082	
	동작구	흑석2	45,229	
	관악구	봉천13	12,272	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18㎡ 초과
	상업지역	20㎡ 초과
	공업지역	66㎡ 초과
	녹지지역	1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9㎡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붙임1 참조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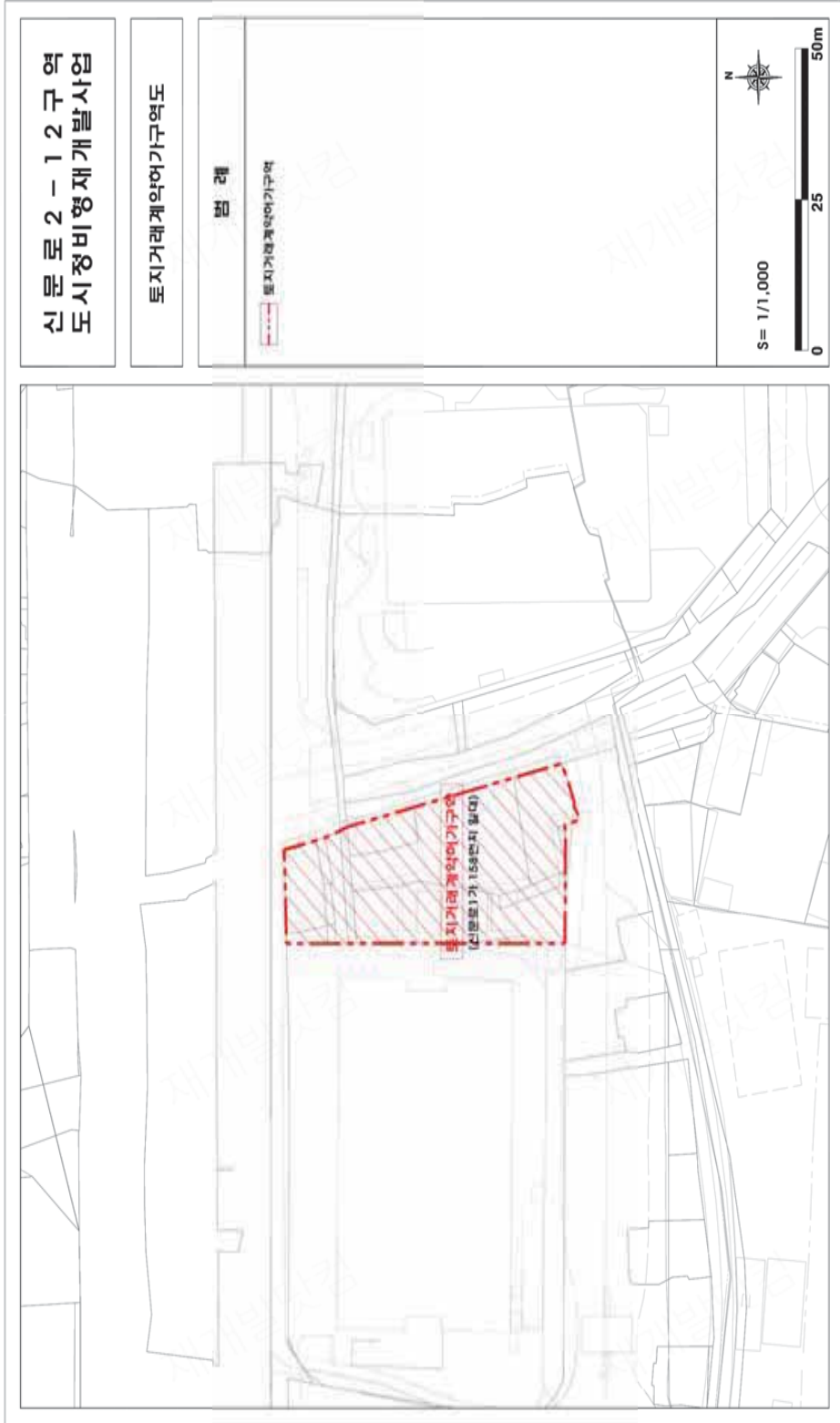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2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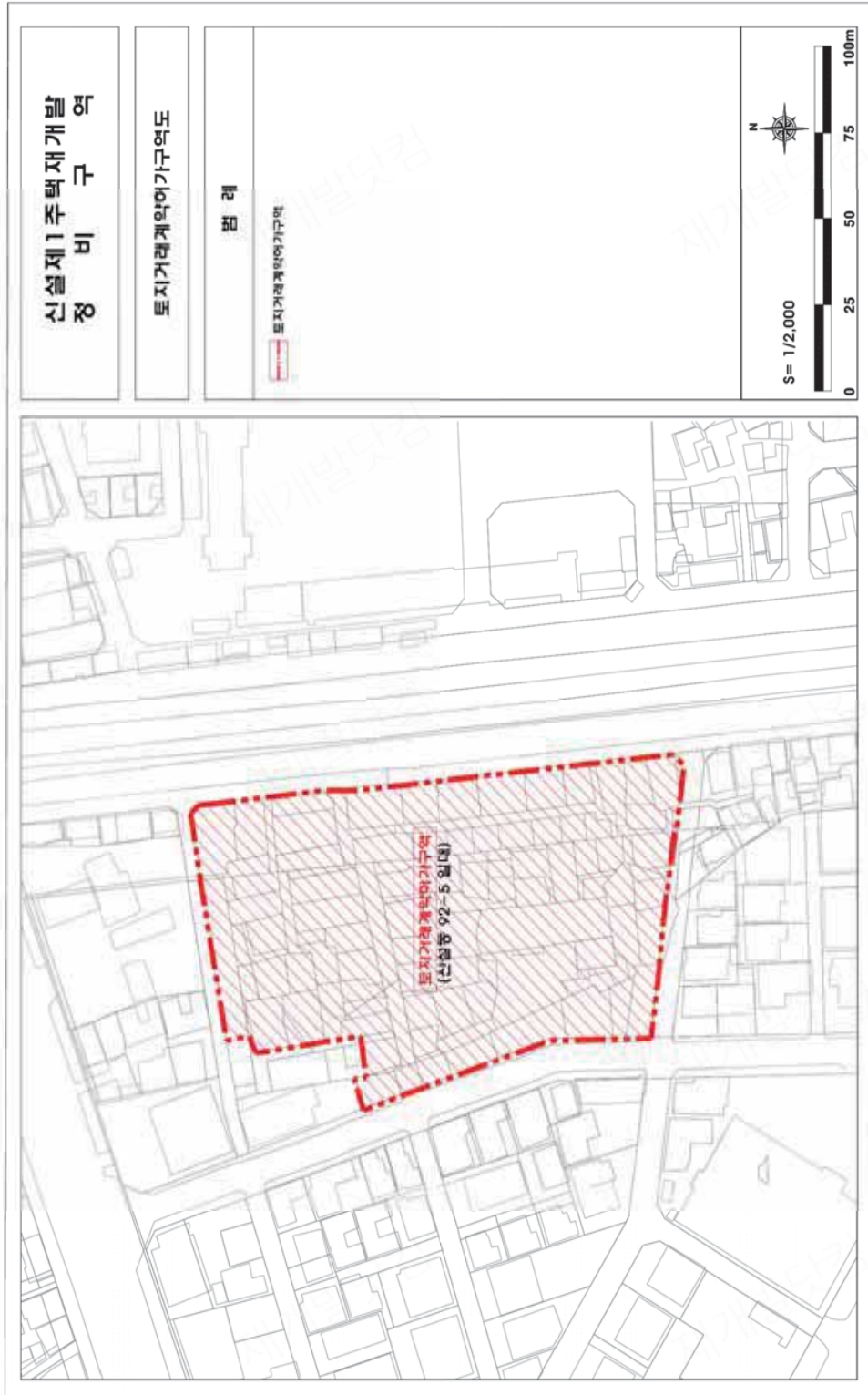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

붙임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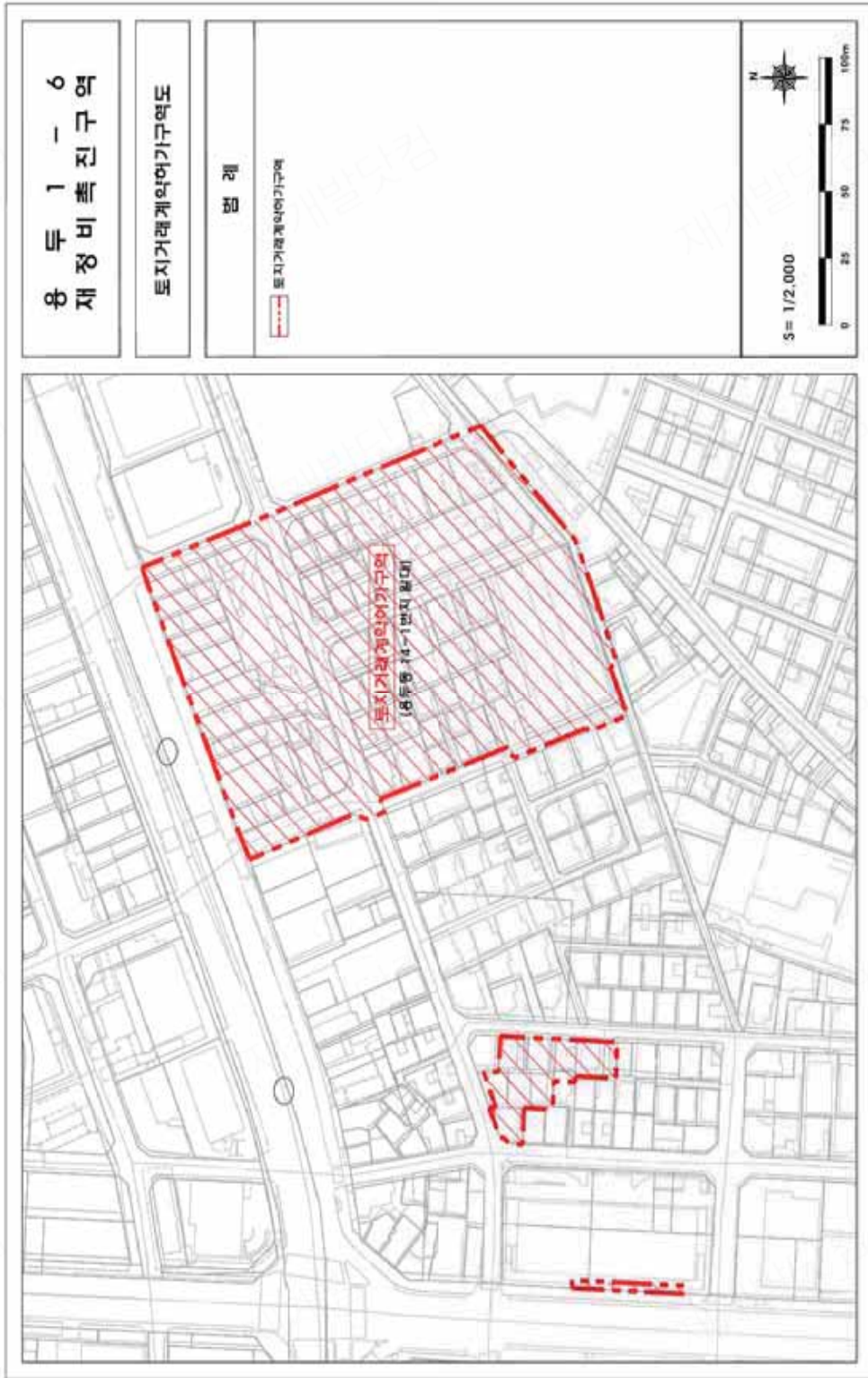
◎ 신문로2-12구역



◎ 신설1구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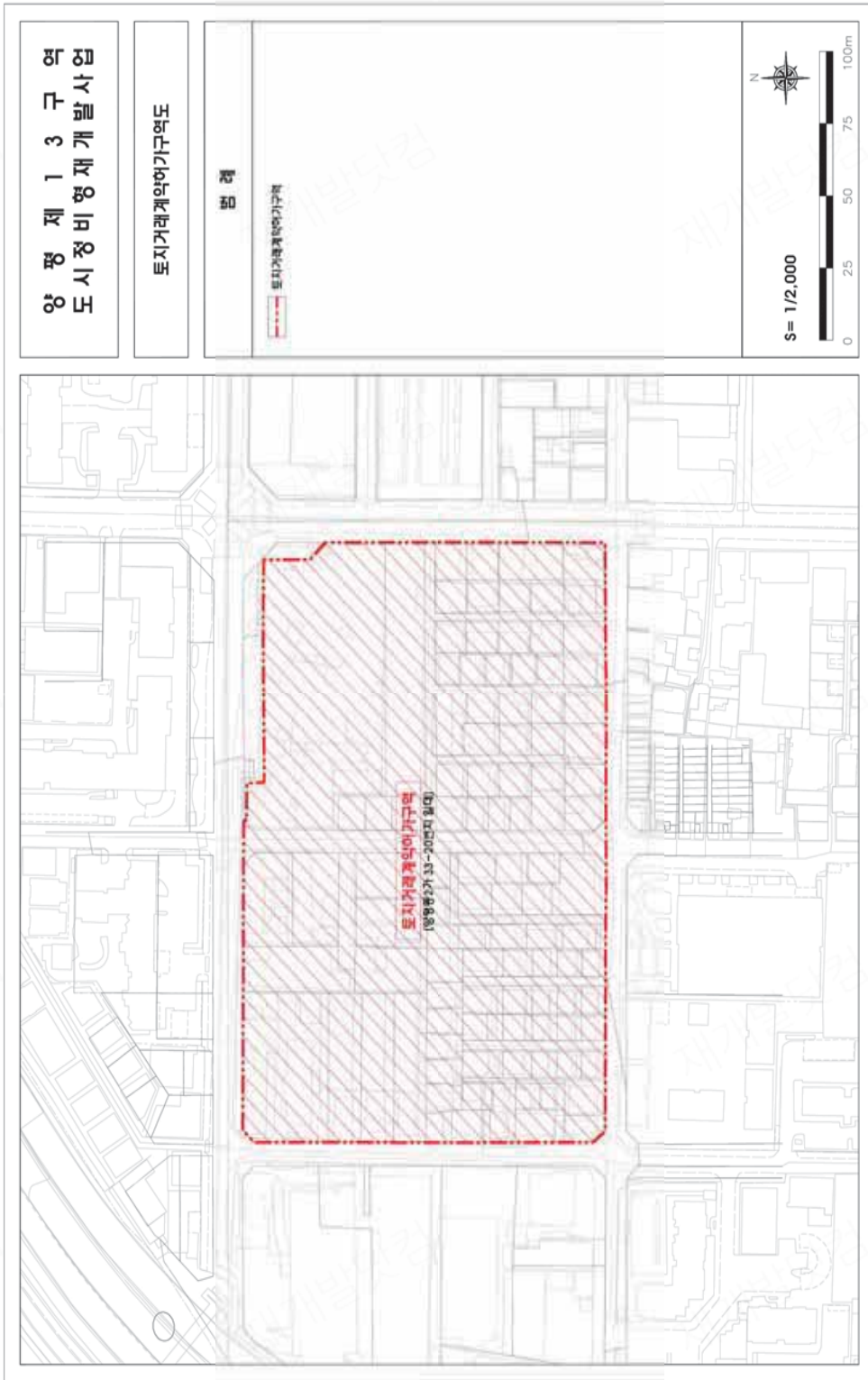
© 용두1-6구역



◎ 강북5구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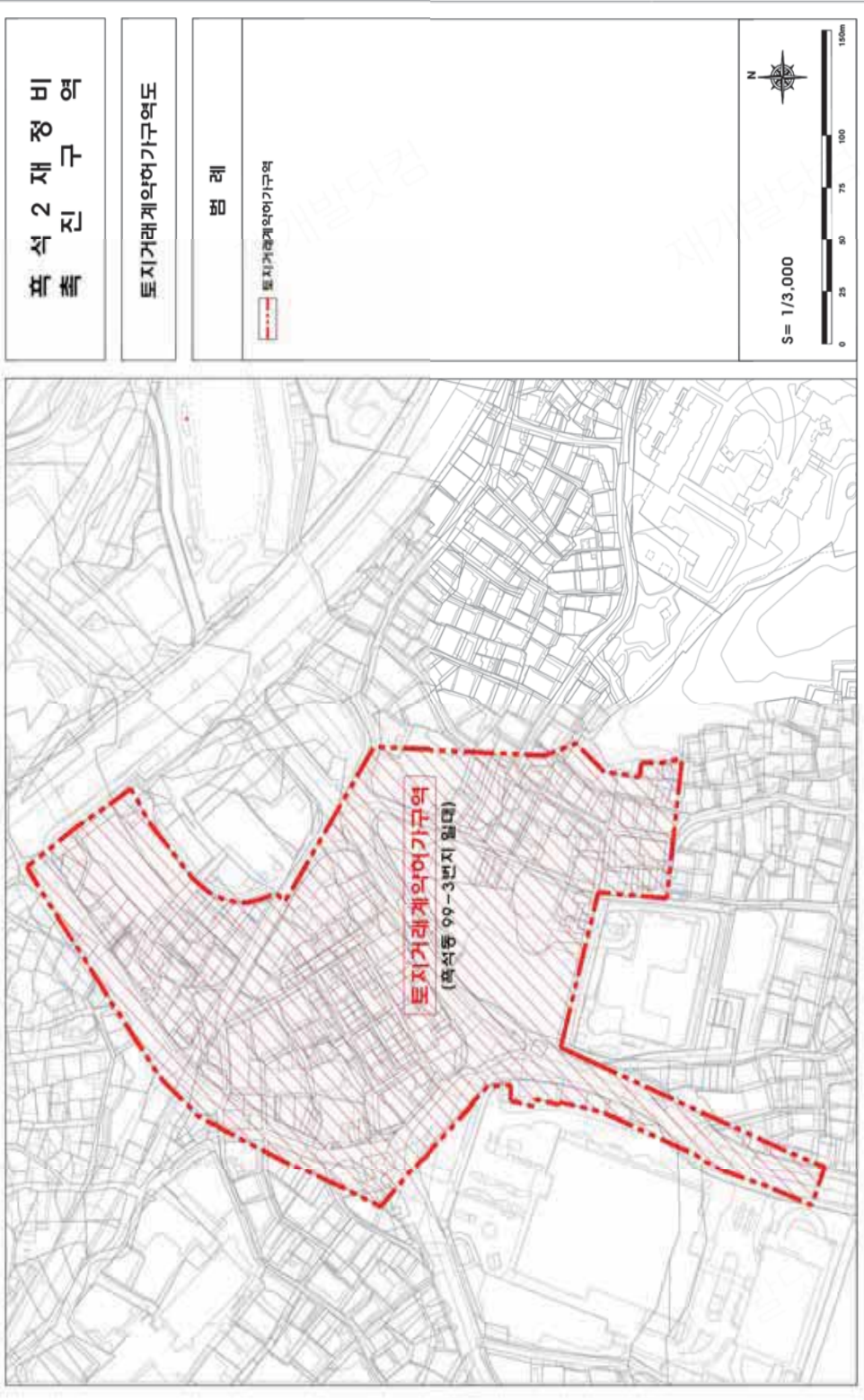
© 양평13구역



© 양평14구역



© 후석2구역



© 봉천13구역

